



안 전 인 증 서

G.M. International S.p.A.

Via G. Mameli, 53-55, Villasanta, MB, 20852 Italy

위 사업장에서 제조하는 아래의 품목이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심사 결과 안전·보건기준에 적합하므로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인증합니다.

품 목

Vibration Transducer Interface

형식·모델(용량·등급) / 인증번호

D5062S-*** (Ex ec [ia Ga] IIC T4 Gc) / 26-KA4BO-0428X

인 증 기 준

고용노동부고시 제2021-22호

인 증 조 건

1. 제조공장

·본 인증서는 'Via G. Mameli, 53-55, Villasanta, MB, 20852 Italy'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한함.

2. 제품개요

·제품개요: 당 기기는 진동 트랜스듀서, 가속계 등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방폭기기임.

·제품정격: $U_m = 250$ Vrms, 출력터미널 7, 8, 9, 10 : $U_0 = 27$ V, $I_0 = 90$ mA, $P_0 = 576$ mW,입력터미널 7, 8 or 8, 9 : $U_i = 30$ V, $I_i = 91$ mA, $C_i = 0$ nF, $L_i = 0$ nH, C_0 , L_0 , L_0/R_0 값은 IECEx ULD 21.0018X를 참고 할 것.·사용주위온도: $-40\text{ }^{\circ}\text{C} \leq T_a \leq +70\text{ }^{\circ}\text{C}$

3. 인증범위: 본 인증서는 아래의 형식번호를 갖는 제품에 한함.

·D5062S-*** (*:방폭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코드임.)

4. 안전한 사용을 위한 조건: [별첨] 참조

5. 인증(변경)사항: 없음.

6. 그 밖의 사항

·안전인증품의 품질관리, 확인심사 수검, 변경사항 신고 등 인증 받은 자의 의무 준수

·본 안전인증서는 반드시 관련 IECEx 인증서(IECEx ULD 21.0018X No.2)와 함께 사용

2026 년 08 월 06 일

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




제26-034072-01-1호 (2/2)

인 증 조 건

[별첨] 안전한 사용을 위한 조건

- 본질안전 기기의 C_i 및 L_i 가 연관기기(케이블 제외)의 C_o 및 L_o 파라미터의 1%를 모두 초과하는 설치의 경우, C_o 및 L_o 파라미터의 50%를 적용하며 이를 초과하지 말 것. (즉, C_o 및 L_o 의 50%가 한계값이 되며, 케이블을 포함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. 기기 C_i + 케이블 $C \leq C_o$ 의 50%, 기기 L_i + 케이블 $L \leq L_o$ 의 50%) 외부 회로(케이블 포함)의 감소된 정전용량은 그룹 I, IIA 및 IIB의 경우 1 μF 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, 그룹 IIC의 경우 600 nF를 초과하지 말 것.
- 당 기기는 KS C IEC 60664-1에 따른 오염도 2 이하에서 사용할 것.
- 당 기기는 KS C/IEC 60079-0에 따라 최소 IP54의 보호등급을 제공하는 외함 내부에 설치해야 하며, 해당 인클로저의 문 또는 덮개는 공구를 사용해야만 접근할 수 있어야 함.